

## 칠곡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11. 25.

행정복지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: 2020. 11. 19.
- 제출자: 칠곡군수
- 회부일자: 2020. 11. 20. 회부
- 상정일자: 제270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 
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(2020. 11. 25. 상정·심사·의결)

### 2. 제출설명의 요지

- 제출설명자: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
  
- 제출이유  
야외운동기구 설치와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유도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.
  
- 주요내용
  - 가. 조례 목적 및 야외운동기구 관리주체의 명확화 (안 제1조~제2조)
  - 나.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의 체계적인 틀 마련
    - 야외운동기구 예산확보 근거조항 (안 제3조)
    -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보고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    - 야외운동기구 설치 기준 (안 제5조)
    - 야외운동기구 관리·점검 및 안내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~제9조)
  - 다.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(안 제10조)

#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윤지영)

○ 「칠곡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」은

야외운동기구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운영상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특히 시설물에 대한 영조물 배상 공제 가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이용을 위해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

○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특이사항 없음

6. 소수의견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